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붙임 1. (제2019-22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 2. (제2019-229호)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
-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_전체합본.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외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대전광역시시장, 울산광역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천민영** 행정사무관 **문달해**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전결 2019. 10. 23.

협조자

시행 예비급여과-2119 (2019. 10. 2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68 팩스번호 044-202-3982 / reve7@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